



제 3 3 4 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 08. 25(목)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 례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6
제안일자	2022. 08. 12.
회부일자	2022. 08. 18.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권광택 의원 외 20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 따라서, 돌봄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31조, 제47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제18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5.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2.08.18. ~ 08.2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72호)
- 의견제출 : 없음

7. 검토의견

□ 제안이유

-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외로움 종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에 관하여 정의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여 정책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권익증진·지위향상에 대한 노력을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권익증진·지위향상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지위향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 경상북도에 적합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 등을 계획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상북도에 적합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정책의 발굴·개발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이는 장기요양요원을 폭언·폭행·성의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총괄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절반이상이 매년 폭언·폭행을 당함
-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권익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함
-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짐으로 처우개선이 시급함
-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분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O
부산광역시	X
대구광역시	O
인천광역시	O
광주광역시	O
대전광역시	O
울산광역시	O
세종특별자치시	X
경기도	O
강원도	O
충청북도	O
충청남도	O
전라북도	O
전라남도	O
경상북도	X
경상남도	O
제주특별자치도	O

붙임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현황(서울특별시)

구분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개소	2013.9.	2016.7.	2017.7.	2017.10.
인력 현황	24명	9명	9명	9명
운영 방법	민간위탁(3년)	민간위탁(3년)	민간위탁(3년)	민간위탁(3년)
	(사)보건복지 자원연구원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서울동북 여성민우회	(사)보건복지 자원연구원
21년 예산	5,043백만원(국 75)			
22년 예산	5,633백만원(국 100)			
주요 기능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직무교육,리더 양성,건강증진) ○돌봄종사자권익옹호사업 (권리교육,정보 제공,노동/취업 상담) ○정책연구사업 ○돌봄가족휴가제,교육상담지원 등돌봄가족지원센터운영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직무교육,리더 양성,건강증진) ○돌봄종사자권익옹호사업 (권리교육,정보 제공,노동/취업 상담) ○정책연구사업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직무교육,리더 양성,건강증진) ○돌봄종사자권익옹호사업 (권리교육,정보 제공,노동/취업 상담) ○정책연구사업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직무교육,리더 양성,건강증진) ○돌봄종사자권익옹호사업 (권리교육,정보 제공,노동/취업 상담) ○정책연구사업

붙임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현황(경기도)

구분	경기도
담당 부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시설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	2021.5.13.
인력 현황	5명
	센터장1, 과장1, 주임3
운영 방법	공기관등위탁(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1년 예산	320백만원(국 75, 시 245)
22년 예산	530백만원(국 100 도 430) 인건비320백만원
주요 기능	○돌봄종사자 전문성강화(교육사업) ○돌봄종사자권익향상(상담사업) ○돌봄종사자인식개선(홍보사업) ○네트워크구축(소통.협력사업)

붙임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현황[인천광역시]

구분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시설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	2021.7.1.
인력 현황	3명
	직원3
운영 방법	공기관등위탁(5년)
	인천사회서비스원
21년 예산	175백만원 (국 75, 시 75)
22년 예산	300백만원 (국100,시200)
주요 기능	○돌봄중사자교육 ○인식개선사업 ○권익보호사업 ○네트워크사업

구분	경상남도		
담당 부서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시설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개소	2020.8.25	2021.8.24	2021.8.26
인력 현황	4명	4명	4명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2	센터장1, 팀장3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2
운영 방법	민간위탁(3년)	민간위탁(3년)	민간위탁(3년)
	(사)경남 고용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	진주여성회
21년 예산	335백만원 (도비330,자부담5)	355백만원 (도비345,자부담10)	370백만원 (도비345,자부담30)
22년 예산	378백만원 (국비100,도비278)	322백만원 (도비312,자부담10)	361백만원 (도비361)
주요 기능	○돌봄노동자 연구개발 및 홍보사업 ○돌봄노동자의건강관리 ○심리상담및역량강화지원 ○권익보호및복리증진현장지원		

붙임6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현황(강원도)

구분	강원도
담당 부서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
시설	강원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	2021.12월(예정)
인력 현황	5명
	센터장1 직원4
운영 방법	공기관등위탁(5년)
	강원도사회서비스원
21년 예산	150백만원 (국75,시75)
22년 예산	400백만원(시비)
주요 기능	○돌봄중사자 권익보호 ○돌봄중사자역량강화 ○요양인력지원

구분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복지여성국 어르신복지과
시설	울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	2021.12월(예정)
인력 현황	4명
	센터장1, 직원3
운영 방법	공기관등위탁(5년)
	울산사회서비스원
21년 예산	240백만원(시비)
22년 예산	350백만원 (국100,시250)
주요 기능	○돌봄종사자 권익보호 ○돌봄종사자역량강화 ○요양인력지원